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가단1216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유 담당변호사 전원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김남균

변 론 종 결 2023. 5. 31.

판 결 선 고 2023. 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20. 체결한 증여계약을 179,758,90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9,758,9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6326호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고, 2022. 5. 9.을 기준으로 한 채권액은 179,758,904원이다.

나. C은 2021. 8. 20. 아내인 피고에게 C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21. 8.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2021. 8. 20.경을 기준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라. 원고는 2022. 8.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C과 피고는 2022. 9. 16.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사해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기 위한 권리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44095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과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5. 12. 이후인 2022. 9. 16.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한 사실, C과 피고는 2022. 9.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등기소로부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압류권자 원고)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정을 내려 말소등기절차가 중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미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나, 아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5. 12. 이후인 2022. 9. 16. 합의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패소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에 의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박혜림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6층 지상19층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지6층 1664.15㎡

지5층 1555.16㎡

지4층 1645.91㎡

지3층 1645.91㎡

지2층 1633.84㎡

지1층 1634.51㎡

1층 1092.26㎡

2층 1153.99㎡

3층 1154.9㎡

4층 1112.26㎡

5층 1112.87㎡

6층 1125.36㎡

7층 356.94㎡

8층 645.94㎡

9층 645.94㎡

10층 645.94㎡

11층 645.94㎡

12층 645.94㎡

13층 645.94㎡

14층 645.94㎡

16층 645.94㎡

17층 645.94㎡

18층 581.36㎡

19층 439.7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호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41.6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 2071㎡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2071분의 21.28

중 2분의 1 지분

-이 상-

